제30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24. 4. 12.

자치행정위원회
전 문 위 원

○ 검토의견(전문위원 서진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세수 감소 전망에 따라 세수 결손 반영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의 증감분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 반영과기 편성된 예산의 삭감, 집행잔액의 반납 등 세출 구조 조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추경(안)으로서 2024. 4. 3.자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 2024년 1회 추경 규모 >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2,390,752,215	100.00%	2,227,864,777	100.00%	162,887,438	7.31%
일반회계	2,093,411,495	87.56%	1,995,570,318	89.57%	97,841,177	4.90%
특별회계	297,340,720	12.44%	232,294,459	10.43%	65,046,261	28.00%
공기업특별회계	181,582,860	7.60%	144,167,773	6.47%	37,415,087	25.95%
상수도사업	81,907,939	3.43%	63,123,957	2.83%	18,783,982	29.76%
하수도사업	99,674,921	4.17%	81,043,816	3.64%	18,631,105	22.99%
기타특별회계	115,757,860	4.84%	88,126,686	3.96%	27,631,174	31.35%
의료급여사업	8,381,096	0.35%	7,888,847	0.35%	492,249	6.24%
발전소주변지원사업	184,762	0.01%	184,762	0.01%	0	0.00%
수질개선	30,770,109	1.29%	30,770,109	1.38%	0	0.00%
공유재산관리	14,833,314	0.62%	4,262,666	0.19%	10,570,648	247.98%
교통사업	25,754,852	1.08%	18,056,600	0.81%	7,698,252	42.63%
도시재정비촉진	1,628	0.00%	1,628	0.00%	0	0.00%
지하수관리	1,625,301	0.07%	1,599,349	0.07%	25,952	1.62%
폐기물처리시설	19,234,395	0.80%	15,295,122	0.69%	3,939,273	25.76%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	14,972,403	0.63%	10,067,603	0.45%	4,904,800	48.72%

□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2조 2,278억 6,477만 7천 원에 비하여 1,628억 8,743만 8천 원이 증가된 2조 3,907억 5,221만 5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78억 4,117만 7천 원이 증가된 2조 934억 1,149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50억 4,626만 1천 원이 증가된 2,973억 4,072만원 입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증액과 관련하여 세입재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총 978억 4,117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세외수입** 79억 1,443만 9천원, **국도비보조금** 87억 1,344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 550억원 **예탁금 및 예수금** 300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 자치행정위원회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비고
총 계	**563,872,680**	515,573,334	48,299,346	**9.37%**
일 반 회 계	**549,039,366**	511,310,668	37,728,698	**7.38%**
특 별 회 계	**14,833,314**	4,262,666	10,570,648	**247.98%**

□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113억 1,066만 8천원에서 7.38% 증가한 5,490억 3,936만 6천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6.23%에 해당합니다.

□ **위원회 소관 부서의 경우**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기정예산 절감분과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본경비 증·감액분을 제외한 국·소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7억 5,848만원 보다 40.71% 증가한 24억 7,139만 2천원으로,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로 7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41억 3,374만 8천원 보다 4.45% 증가한 147억 6,208만 8천원으로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 3억원, 한파쉼터 난방 소모품비 지원(성립전) 2억 7,8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9억 407만원 보다 0.80% 증가한 9억 1,133만 1천원으로 친절행정서비스 운영 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757억 2,252만 7천원 보다 1.41% 증가한 2,796억 1,347만 2천원으로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억 3,000만원,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1,600만원, 시청사 외곽경비 운영 1,995만 8천원, 시정연구원 운영 10억 9,639만 원,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372억 4,899만 5천원 보다 35.04% 증가한 503억 271만 3천원으로 가구산업 홍보비 지원 4,500만원, 해외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9,600만원, 매출채권보험 지원 9,600만원,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1억 1,000만원,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 83억 6,200만원,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25억원, 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 8,166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억 2,084만 3천원, 사회적 경제 판로지원 1억원, 청사 유지관리비 4억 100만원,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 2,930만 5천원, 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 9,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486억 6,317만 3천원 보다 11.86% 증가한 1,662억 8,750만 6천원으로 남양주시립박물관 운영 1억 5,000만원, 청년 예술창작 지원 1억원, 광릉숲 축제 1억원,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1억 5,00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6억원, 청년도전지원사업 4억 5,740만원,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11억 6,224만 4천원, 수동면 청소년시설 조성 5억 2,500만원, 다산정약용 상징기념물 제작 설치 3억 원, 체육인 기회소득 6억 450만원,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46억 3,000만원, 퇴계원 운동장 조성 33억원, 별내배수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22억원,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비 27억 6,399만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4억 5천만원, 다산 지금 배수지 테니스장 시설개선 3억원, 노후도서관 시설개선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소관 예산은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분과 마을 회관 등 주민 편익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운용은 공유재산관리로 기정예산액 42억 6,266만 6천원 보다 **247.98% 증가**한 148억 3,331만 4천 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12.81%에 해당합니다.

그 외 세부적인 부서별 주요 내역은 별도로 배부된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 67,513천원에서 총 82,741천원의 수입이 증가한 150,254천원을 2024년도 말까지 조성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 확정 후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기타 여건의 변화 등으로 세입세출에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편성되는 예산안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라는 사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의 충족 여부와 함께 기정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타당성 및 예산 산출액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금은 복잡·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실현 및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 즉,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 보유자금을 보유·운용함으로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는 안정적이면서도 효율성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주요 내역은 별도로 배부된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